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朴英凡 (한성대 교수)

김대중대통령이 금년 7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개진하고 이어서 정부가 조기시행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노·사·정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조정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단축, 즉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정부가 노·사·정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하여 내년 중에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차등화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1) 지난 해 10월 노·사·정간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실업대란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사·정간의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경노선을 견고 있던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키고 정부와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형사업장에 조직기반을 둔 민주노총에게는 임금삭감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조직원의 임금인상을 의미하므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이 보다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직접대화를 주장하여 아직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표〉 주 5일근무제 도입의 쟁점사항

	경영계	노동계
연월차휴가	통합하여 18일	통합하여 최소22일 (1년근속시 하루씩 가산)
시행시기	2003년 시작, 2013년 완료; 1천명이상 기업부터	2002년 시작, 2004~5년 완료; 공무원, 금융, 300인 이상 기업부터
연장근로한도	주 15시간으로 확대	주 10시간으로 축소
연장근로시 임금할증율	25%로 축소	현 50%로 유지
생리휴가	폐지	현행 유지
변형근로시간제	1년 단위	6개월 단위

특히 연월차휴가제도의 조정과 시행시기가 핵심 쟁점화되어 있다(〈표〉 참조). 월차휴가제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노사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재계는 월차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휴가일수를 18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통합은 하되 현행과 같이 최소 22일에 1년 근속시 하루의 휴가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재계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완료하는 것을, 노동계는 내년부터 시행하여 2004년이나 2005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재계는 주 15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노동계는 주 10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장근로시 임금할증율을 경영계는 25%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현행대로 50%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재계는 폐지를, 노동계는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1년 단위, 노동계는 6개월 단위를 주장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찬성하고 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니 근로시간의 단축은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현 시점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노동절의 기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미국 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에 있듯이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늘어나는 무역흑자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근로시간단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IMF 위기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일자리창출의 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OECD사무국의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임금억제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에 단기적인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 자동화 등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노동비용 상승에 기업이 대응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효과는 반감된다. 프랑스, 독일 등 구주 선진국은 근로자, 고용주, 정부의 비용분담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특히 지난 해 10월 노·사·정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근로자들이 연월차휴가의 상당 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연월차휴가가 축소된다면 이는 수당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생활수준의 저하가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원칙의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가 받아들일지 의문시된다.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큰 명분은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 관광, 레저산업 관련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動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생산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365일 연중 가동하여야 하는 장치산업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현행대로 12시간이 유지된다면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신규인력이 충원으로 4대 사회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신입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비 등 추가 노동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노동력의 사용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는 기업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생산성 증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며, 외국의 예는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한 휴일제도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개별사업장에 강제될 때,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도하였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흑자는 1989년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 당시 우리 나라는 3低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으나 IMF 위기의 파고를 막 넘은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불안으로 우리 경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1989년의 경우)과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므로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할 수 없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근로자의 표를 의식하여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더더욱 안될 말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필자 약력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미국 Cornell대학교 경제학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 <http://www.igenet.com>